

「첨단로봇·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」 기업지원(실증지원) 모집 연장 공고

(재)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내 특화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『첨단로봇·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』의 수혜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7월 20일

(재)전남테크노파크원장

1 지원개요

- **(사업목적)** 제조기업 수요기반의 AI·로봇 대표공정모델 실증 및 보급 확산을 통한 도내 첨단로봇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- **(지원규모)** 2.1억원
- **(지원기간)** 협약일로부터 ~ 2026. 11. 15.
- **(지원프로그램 및 내용)**

구 분	지원내용	지원규모
실증지원 (주관기업)	○ 로봇공정모델 적용을 통한 공정 첨단화 및 既 개발 모델 실증 지원 ○ 제조기업 현장의 첨단 제조로봇 및 시스템 설계 도입 * 수행주체 : (주관) 로봇수요기업, (참여) 지역 내·외 제조로봇 및 로봇SI기업	기업당 최대 70백만원, 기업부담금 「지원금의 현물(15%), 현금(10%) 이상」

※ 총 3개사 내외(순천시 1개사, 장성군 1개사, 무안군 1개사) 지원

※ 분야별 지원금 예산한도 내에서 금액 조정 가능

※ 외산로봇 도입 및 제출된 서류(견적서), 사업계획서가 허위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

○ (신청자격)

- (주관기업) 공고문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순천시, 장성군, 무안군 내에 본사, 공장, 연구소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(수요기업)
- (참여기업) 수요기업 대상 공정에 로봇시스템 설치를 위한 SI 관련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기업(공급기업)

○ (제조업종) 기계, 금속, 자동차, 전기·전자, 조선·항공, 섬유, 식·음료, 바이오·화학 등 로봇 자동화가 필요한 제조업 전분야

○ (지원금 지급) 전남TP-주관기업-참여기업 3자 협약 후 주관기업 50% 선지급

-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지급
- 사업수행 결과평가 시 '사업 성공 판정' 받은 기업 한하여 나머지 50% 지급
- * 결과보고서 제출 전까지 사업비(자부담+VAT)를 선집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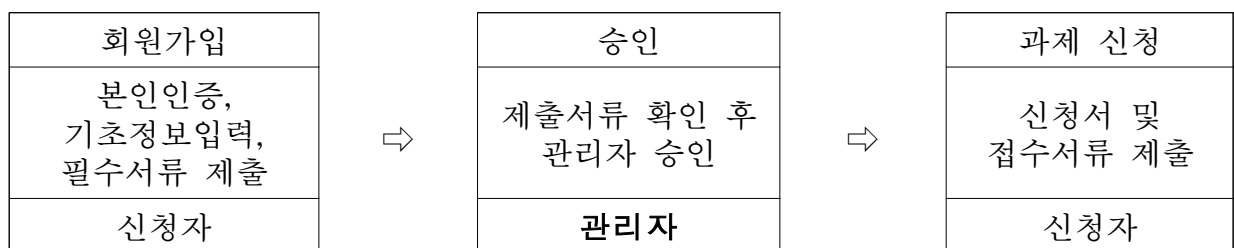
② 접수방법

○ 온라인 접수 : 전남테크노파크 데이터플랫폼(<https://data.jntp.or.kr>)

- 우편, 이메일 접수는 시행하지 않음
- 온라인 과제 신청 절차
 - 제출서류는 PDF로 변환(스캔)하여 온라인 등록
 -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확인은 홈페이지(<https://data.jntp.or.kr>)

○ 사업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

- 온라인 과제신청 절차



- 과제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
 - * 회원가입 절차에 1-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전 가입 요망
-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증(또는 법인등기부등본), 최근 3년 재무제표,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
 - * 신생기업의 경우 관리자 확인 후 승인 예정
 - * 신청자 확인 절차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 필수

3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부수	비고
1	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각 1부	
2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	1부	
3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1부	
4	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1부	
5	중복지원 금지사항 약약서	1부	
6	성실의무 이행 서약서	1부	
7	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	각 1부	
8	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1개월 이내) 사본	각 1부	
9	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(재무상태표 / 손익계산서 / 현금흐름표 / 제조원가명세서)	1부	
10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각 1부	
11	4대보험 가입자명부	1부	

* (9번) 재무제표 관련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

- ① 재무제표 :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,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
- ②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가 없을 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(개인사업자 등)
 - ※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시, **원본대조필 필히 날인**하며, **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**
 - ※ 접수기간(마감일 18:00) 이내 신청접수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

4 평가방법 및 기준

- **(평가방법)**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(TP) → 현장실사 → 선정 평가(대면)
 - (사전검토) 유사·중복지원, 사업참여제한, 사전제외대상여부,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사전검토 실시
 - (실태조사)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 및 기업의 영업활동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 실시
 - (선정평가) 평가위원회 개최 및 대면 발표평가 실시

○ **(평가기준)** 외부평가위원 선정평가를 통해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시 지원대상 과제 선정

-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혜기업 선정
- 서류심사 지표

항 목	평가내용
서류심사	○ 제출서류의 적정성, 세무, 금융분야 적합성 등 검토

- 평가항목

항 목	평가내용	배 점
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	○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○ 추진체계 및 세부 계획의 적정성·타당성 ○ 소요 사업비의 적정성	30
수행 능력	○ 주관 및 참여기업의 보유 인프라(인력, 기술 등) 역량 ○ 과제수행 일정계획 및 수행 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	30
공정모델 투입 적합성	○ 로봇공정모델 현장 적용 필요성 ○ 로봇공정모델 투입 가능성 ○ 로봇 예정 공정과 전후 공정의 연계성	30
수행의지	○ 기업 및 책임자의 과제 추진 의지	10
배점 합계		100

5 유의사항

○ **(중복지원 불가)**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(주제)로 기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

- 중복지원을 한 경우,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
-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지역특화산업육성(비R&D)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
- ※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,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

○ **(지원제외 대상)**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

- 「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(사업의 신청 및 사전 검토)」 및 「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」 [별표2]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름

< [별표 2] 지원제외 대상 주요내용 >

- ①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, 기 개발·기 지원 과제와 유사·중복의 경우
- ②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대표자,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- ③ 부도업체 /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※ 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(보증)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.
- ④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※ 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(보증)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.
- ⑤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⑥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**부채비율이 연속 500%이상인 기업** 또는 **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**
 - ※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이상인 경우(신용등급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)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
- ⑦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
- ⑧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

※ 세부내용은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조

○ **(기타 유의사항)**

- 모든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,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(이체 내역 등) 제출 必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

○ **(이의신청)**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신청

6 추진일정

○ 신청서접수 : 2026. 7. 20.(월) ~ 8. 7.(금) 18:00 까지

- 8월 7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로 평가 및 협약체결 후 사업 추진



○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(안)



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7 문의처

○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

부서	전화번호	이메일
사업 담당 (ICT로봇융합센터)	061-395-3174	ksb@jntp.or.kr
	061-395-3177	lhs@jntp.or.kr
시스템 담당 (기업진흥본부)	061-729-2563	qorbf13341@jntp.or.kr